



Briefings of IMO Meeting

SSE 1 (10-14 Mar. 2014)

BRIEFING STATUS

- Flash*
 Highlight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Ref.: IMO-0019-2014

Subject : News Final of SSE 1

제 1차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이하 “SSE 1차”라 한다)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4년 3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SSE 1차 회의 결과 관련하여, 1차 소식지 News Flash 및 2차 소식지 News Highlight로 주요의제에 대한 요약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소식지 News Final에서는 결정사항에 대한 요약 및 선사, 조선소 및 제조자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일지도 향후 MSC 또는 MEPC에서 채택 이후에 발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관의 승인 조건에 대한 권고 개정(Res.A.761(18))

● **Relevant Provisions** : Res.A.761(18)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업자 승인요건에 관한 기구의 권고

● **Background** : 국제구명정제조자협회(The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s Manufacturers' Association, ILAMA)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 및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관련 지침인 Res. A.761(18)과 MSC.1/Circ.1328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Res. A.761(18)의 개정안을 제안함

● **Discussion and Outcome** :

국제구명정제조자협회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장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Res. A.761(18) 5.11항을 MSC.1/Circ.1328의 6.1.5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함 :

"Items of equipment should be checked to ensure that all are in good condition and dated items should be replaced in cases where the expiry date falls before the next service date of the liferaft." (차기 정비주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의장품을 교체할 것)

대부분 ILAMA가 제안한 본 의제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논의 결과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개정안을 MSC 94(14.11)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할 예정임



Briefings of IMO Meeting

SSE 1 (10-14 Mar. 2014)

BRIEFING STATUS

- Flash*
 Highlight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Ref.: IMO-0019-2014

Application : SOLAS 협약에서 요구하는 팽창식 구멍뚫목을 설치한 모든 선박

Implications

Shipowners, Service Providers : 시한성을 가지는 구멍뚫목 의장품의 유효기간이 차기 정비주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교체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으니 추후 위원회 승인 결과를 주목할 것

2.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 요건 개발

● **Relevant Provisions** : 새로운 요건 개발

● **Background** : 선박에 설치된 하역설비 및 윈치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요건의 부재로, 이러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사용 시 사상자 발생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

● **Discussion and Outcome** :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의 설계, 증서 발급, 시험 및 검사 관련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요건을 개발하자는 의제로, 작업반이 개설되었으며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작업반에서 제출한 논의 결과를 승인함 :

- 개발될 조치(potential measures)의 형태(요건 또는 지침) 및 성격(강제사항 또는 권고사항)은 SSE 2(15.3)에서 초안을 개발한 후 결정하기로 함
- 개발될 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물용 하역설비로 한정하지 않고 선박의 하역설비 및 윈치로 확대하기로 함
- 개인용/여객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LSA Code와 같은 강제 규정에 의해 시험되고 승인된 설비 중에 다목적 또는 이중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있음. 이러한 다목적 또는 이중 목적의 설비가 강제 규정에 의해 적용 받지 않는 대안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발될 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이외에 LSA Code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설비는 포함하지 않을 것
- 개발될 조치는 모든 SOLAS 적용선박에 적용하며 MODU Code에 따른 증서를 소지한 MOUs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Ref.: IMO-0019-2014

- 현재로서는 어선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향후 어선도 적용범위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SSE 1 작업반 논의 결과(SSE 1/WP.5)를 고려하여 통신작업반이 개설되었으며 요건 개발 완료시점을 2017년으로 연장함

Implications

Shipowners, Shipbuilders and Manufacturers : 선박 하역설비 관련 새로운 요건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음에 주목할 것

3. IACS 통일해석 - FSS Code 14장 고정식 갑판 포말소화장치의 요건에 대한 통일해석

- **Relevant Provisions** : FSS Code 14장 14.2.3.2.3규칙, MSC.1/Circ.1120

- **Background** : MSC 91('12.11)에서 전면 개정된 FSS Code 14장의 내용 중 고정식 갑판 포말소화장치 포말 모니터가 설치가능한 위치와 관련하여, 연료유 탱크 상부가 누락되어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음. 이에 IACS는 기존 통일해석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료유 탱크 상부에도 설치가 가능함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통일해석인 MSC.1/Circ.1120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함

- **Discussion and Outcome** :

Foam systems positions of aft monitors

The port and starboard monitors required by this paragraph may also be located in the cargo area above oil bunker tanks adjacent to cargo tanks if capable of protecting the deck below and aft of each other.

(양현의 모니터는 서로의 하부 및 후부 갑판을 보호하여 줄 수 있다면 화물탱크에 인접한 연료유 탱크 상부의 화물구역에도 위치할 수 있음)

논의 결과 아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IACS가 제안한 통일해석 개정안에 찬성하였으며, 아울러 SOLAS Reg.II-2/3의 “화물구역(cargo area)”의 정의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기로 결정함. 전문위원회는 동 통일해석을 MSC 94('14.11)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예정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Ref.: IMO-0019-2014

임

Application : SOLAS Reg.II-2/10.8에 따라 고정식 갑판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한 재화중량 20,000톤 이상의 탱커

Effective : 미정

Implications

Shipbuilders : MSC 94에서 동 개정안 승인 시 기존 협약 요건의 취지대로 명백하게 고정식 갑판 포말소화장치의 포말 모니터가 연료유 탱크 상부에 설치 가능하게 되므로 위원회 결과를 주목할 것

4. IACS 통일해석 - MARPOL 부속서 1장 12규칙의 개정

● **Relevant Provisions** : MARPOL 부속서 1장 12규칙 - 슬러지탱크의 요건

● **Background** : IACS는 지난 MEPC 63('12.2) 및 DE 57('13.3)에서 논의되었던 MARPOL 부속서 1장의 12규칙(슬러지탱크의 요건) 개정안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였음. 동 회의에서 이 의제에 대하여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함

● **Discussion and Outcome** :

- MEPC.1/Circ.753/Rev.1의 현존선 적용일자와 관련하여 동 개정의 발효일자를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현존선" 을 "2017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현존선"으로 수정함
- 현존선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초안작업반은 새로운 규정 12.3.3.1 및 12.3.3.2을 1990년 12월 3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새로운 규정 12.3.2항을 고려하여, 모든 슬러지탱크에는 MARPOL 동 부속서 13규칙에서 언급된 표준배출구로 연결된 지정된 슬러지배출펌프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각기 서비스탱크 및 보일러용 슬러지 혼합탱크와 같이 슬러지의 배출 수단으로 승인된 기타 수단은 MARPOL 부속서 1장 UI 19.4항에 따라 본 규칙은 면제됨

12.3.3규칙에 대한 개정된 통일해석에 대하여 MEPC 70('16.10)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정된 MARPOL 부속서 1 12규칙에 대하여 MEPC 67('14.10)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Briefings of IMO Meeting

SSE 1 (10-14 Mar. 2014)

BRIEFING STATUS

- Flash*
- Highlight*
-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3 steps as *Flash* - *Highlight* - *Final*.

Ref.: IMO-0019-2014

Application : MARPOL 부속서 1장 12규칙에 따라 슬러지탱크를 설치한 모든 선박

Implications

Shipowners : 위원회 승인 시 슬러지탱크와 관련하여 상기 요건이 현존선에 소급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원회 승인 결과를 주목할 것

P.I.C:

Jung Bo-hae /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 + 82 70 8799 8325

Fax :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